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제(1)호 약관(구 서울은행) 개정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4조(거래장소)거래처는 신탁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함) 이외의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함)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 장소 또는 거래 방법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4조(거래장소)**거래처는 신탁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함) 이외의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함)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 장소 또는 거래 방법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문구 추가
제25조(조세 및 비용) ①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제25조(조세 및 비용)** ①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합니다.	문구추가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은행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수수료, 차입금의 이자,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신탁의 외부감사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수수료, 차입금의 이자,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신탁의 외부감사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문구추가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26조(수수료) ①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수수료)** ①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사전에 안내한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구추가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생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구수정
제28조(특별중도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제31조제4항의 해지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8호의 사유가 2006. 2. 9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8조(특별중도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의 해지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8호의 사유가 2006. 2. 9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문구수정
제33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	**제33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구추가 및 단서삭제

현 행	개정안	비 고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거래처는 인감(또는 서명)·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명·대리인명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은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은행이 요구하는 정보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② 거래처는 인감(또는 서명)·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명·대리인명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은 서면신고 없이 전화,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은행이 요구하는 정보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문구정비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삭 제>	
제34조(증서의 재발급) 제34조에 따라 통장·거래인감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에 은행은 거래처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증서를 재발급합니다.	**제34조(증서의 재발급)** 제33조에 따라 통장·거래인감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에 은행은 거래처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증서를 재발급합니다.	인용조항 수정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38조(통지방법) ① (생 략) ② 은행이 제1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 다. 다만,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거래처가 제3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9조(신탁금의 시효)**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38조(통지방법)** ① (좌 동) ②은행이 제1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은행에 대한 통지등이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없이 거래처가 제3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삭 제>	도달주의 문구정비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40조(약관의 변경등) ① 은행은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39조(약관의 변경 등)** ①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다만,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재·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조항변경
제42조(면책)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또	**제41조(면책)**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또	문구수정

현 행	개정안	비 고
는 서명)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위조·변조, 비밀번호의 누설 등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생 략) ③ 은행은 제33조의 신고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신 설>	는 서명)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위조·변조, 비밀번호의 누설 등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좌 동) ③거래처가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33조의 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카드,비밀번호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 행	개정안	비 고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거래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거래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거래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